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5.27)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종호]

목 차

1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2
2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
3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10
4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14
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7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7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포장박스제조공장인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조기정착을 꾀하고, 장애인의 근로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현황

- 회 사 명 : (주)도하인더스트리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규 모 : 부지 6,612m³ / 공장 1,200m³
- 사업내용 : 포장박스제조업(펄프가공)
- 고용규모 : 37명(장애인 30명)
- 사 업 비 : 2,549백만원(군비 1,189, 민간자본 1,360)
- 소 유 자 : 거창군

나. 위탁사무

- 「거창군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업무 및 기능)
 -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위탁사무 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라.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 포함)
 - ※ 장애인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리. 수탁자 선정

- 수탁자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마. 향후 추진계획

- 2013. 5월 :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3. 6월 초순 : 수탁자 모집 공고
- 2013. 6월 중순 :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수탁 계약 체결
- 2013. 6월 하순 :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소

4.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운영)

5. 검토결과

- 포장박스 제조장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른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일감확보, 판로 개척 및 공장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그 밖의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향상 등을 감안할 때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은 동의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법률 제11239호]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47호]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근로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나. 근로사업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다. 위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근로장애인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운영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자. 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별표 4, 별표 5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50,000천원(2013년 1회 추경시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 04. 02. ~ 04. 22) 결과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 업무와 기능을 근로사업장 운영,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지역사회 사업과 연계,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9조**에서 근로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근로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안 제9조 운영비에서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둠으로서, 위탁 받은 법인이나 업체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521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

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⑤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192호]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거창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3
- 나. 제출자 : 조기원 의원 외 2인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국가 유공자의 생활과 경제적 안정 도모와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자, 만65세 이상인자,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계약일 1월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계약신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계약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계약의 해지(안 제8조), 사용료 징수를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3. 05. 13. ~ 05. 20) 결과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자, 만65세 이상인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매점의 경우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제한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계약신청은 계약일 1월 이전 공고하고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 군수에게 제출한 조례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법률 제11513호]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1690호]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1호]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

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3
- 나. 제출자 : 강철우 의원 외 2명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 거창군 포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3. 05. 13. ~ 05. 20) 결과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노력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합계획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동시에
 -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144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우리 군민이 쉽게 잘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용어를 순화함(안 제5조제3호, 안 제7조제2호)
- 나. 중복되는 용어를 변경함(안 제7조제1호)
- 다. 행정기구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확보(25,000천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입법예고(2013.04.01. ~ 04.21) 결과 : 의견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정의에 앞장서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 위해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중복되는 용어 변경과 행정기구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90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함(안 제6조)
- 나.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7조)
- 다.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제11조)
- 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 04. 08. ~04. 28) 결과

○ 의견 있었으나 반영치 않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서 자치사무의 수탁기관 재계약시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6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90호]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3.1.1)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하는 법조문·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군지역과 관련이 없는 중과대상지역 조항 삭제함(안 제13조)
- 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를 정비(안 제14조, 제15조)
 - 과세특례 ⇒ 도시지역분
- 다.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변경함(안 제16조)
 - 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제3호, 제112조제1항, 제115조제1항제3호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 03. 27. ~ 04. 15) 결과 :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13. 1.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하는 법조문·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11690호]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5.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5. 13

2. 제안이유

-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된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데크 시설의 이용료 징수와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승대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군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수승대관광지의 새주소 및 면적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군 금고 납입시간을 변경함
(안 제6조·제7조)
- 다. 유선장 폐지에 따른 유선장이용권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5항)
- 라. 현실에 맞지 않은 관람료 면제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5호)
- 마. 오토캠핑장, 야영장 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정함(안 별표2)
- 바. 야영장 데크 설치 및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 05. 07. ~ 05. 27) 결과 :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수승대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수승대관광지의 황산리 769번지를 은하리길 2번지로 새주소를 바꾸고 235,479m²를 오토캠핑장 신설 등으로 확장된 297,679m²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유선장 폐지에 따른 유선장이용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관람료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 **안 별표 3에서** 오토캠핑장, 야영장 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와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한 조례안으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11690호]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